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이주인권팀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인권과 및 기획조사팀”을 “아동청소년인권과, 기획조사팀 및 이주인권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이주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주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이주민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증인의 보호
6. 이주민 및 외국인 관련 구급·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원”으로 한다.

제6장(제18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205”를 “2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0”을 “2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3”을 “194”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149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4253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9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주인권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주인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주인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권침해조사과장이 분장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침해조사국) ① (생 략)	제9조(침해조사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u>아동청소년인 권과 및 기획조사팀</u> 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 고,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 한다.	② ----- ----- <u>아동청소년인 권과, 기획조사팀 및 이주인권 팀</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④ ----- -----.
1. <u>이주 인권 관련 법령·제도</u> · 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u>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u>	<삭 제>
2. <u>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 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 의 표명</u>	<삭 제>
3. ~ 6. (생 략)	1. ~ 4. (현행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7. <u>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u> · 협력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이주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주 인권 관련 법령·제도
· 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
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
의 표명
3. 이주민이 피해자인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
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
· 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
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
금 지급 및 진정한·증인의
보호
6. 이주민 및 외국인 관련 구급
·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
· 협력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장 한시 정원

제18조(한시정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

대통령령 제3149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4253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u>2026년 2월 28일</u>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9년 2월 28일</u>-----.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5</u>	<u>206</u>	+1
•	•	•	
•	•	•	
일반직 계	<u>200</u>	<u>201</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93</u>	<u>194</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4